

「법위반사실의공표에관한운영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27조(시정조치) 중 “법 위반사실의 공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 결정(2001헌 바43, 2002. 1. 31.결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다.

동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법 위반사실의 공표” 부분을 수정, 지침제목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으로 개정하고, 지침내용 중 피심인으로 하여금 “법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을 공표하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공표요건을 신설하고, 기타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수정하였다.

또한, 일반소비자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수명(受命)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공표요건을 구체화(동 지침 3의 나)하고, 공표내용을 피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동 지침 5.가의 (3))토록 하였다.

「법위반사실의공표에관한운영지침」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본지의 ‘부록(59면 이하)’에 게재하였다.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부당지원행위 조사나 심결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과 관련 부처나 업계에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투명한 법 집행 및 객관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부당지원행위 심사의 객관성 확보 및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동 심사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결과 나타난 새로운 부당지원유형, 즉 ①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내에 회수하지 아니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수령, ② 계열금융회사가 대여금 회수시 약정 연체이자율이 아닌 일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 ③ 지원주체가 금융회사에 예금·유가증권·부동산 등을 담보제공 한 후, 지원객체가 금융회사로부터 저리 자금대출, ④ 임대료를 지연수령 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수령 또는 과소수령 등을 자금거래의 예시에 새로이 추가하고, 지원객체가 보유한 부도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 고가매입을 자산거래의 예시에 추가하였다.

둘째,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① 개별정상금리 산출시 지원객체가 유사한 시

점에 차입한 금리의 산출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즉, 유사한 시점의 범위를 현행 지원행위일 직전, 직후 또는 전후 1주부터 3개월 등의 기간을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명시함으로써 3개월 등의 기간을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해석할 소지를 불식하고, 지원 받은 시점과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실적이 없더라도 그 이전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그 시점에 적용되고 있는 금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만기가 없는 지원행위의 경우 개별정상금리로 월별 평균차입금리만을 규정하고, 동 월별 평균차입금리 계산시 당해 월에 차입한 자금의 규모를 가중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동안의 심결례를 반영하여 실제 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와의 차이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② 부동산 임대차거래에서 정상임대료 산정방법을 법인세법상의 기준과 동일하게 하는 한편,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환산방법을 부가가치세법상의 기준과 동일하게 하였다.
- ③ 당해 인력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양자에게

근로제공 하는 경우, 그 양자에 대한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의 구분관계가 불명확할 때의 정상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현행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 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을 정상급여로 간주하는 내용을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양자의 매출액 총액 중 지원객체의 매출액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지원객체의 정상급여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넷째, 현행 중점심사대상 규정은 동 요건과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부당지원행위 여부의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에 이러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금번 개정안에서는 중점심사대상 선정요건, 지원크기 기준은 전면 삭제하고, 중점심사대상 중 지원객체 기준의 단서규정은 일부 수정하여 부당성 판단기준에 이기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사업부문을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사한 기업에 대한 지원행위에 대해 부당한 지원행위로 보지 않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다.

다섯째, 개별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였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하고, 약관사건의 신속·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약관법 개정(안)을 2002. 3. 15(금)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약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준약관 보급 확대를 위해 소비자단체 및 소비

자보호원에 표준약관의 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공정위가 일정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표준약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표준약관 사용권장을 받았으면서도 표준약관과 다른 개별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는 표준약관이 아님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치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오인성이 크고 표준약관의 신뢰를 크게 해치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며,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표준약관에서 정한 소비자보호기준보다 더 불리한 해당 약관의 내용을 권리로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약관사건의 신속·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추진하여 공정위 또는 양당사자가 요청하는 사업자와 고객간 약관분쟁에 대하여 사실 확인 또는 조정업무를 권장하도록 하고 협의회는 분쟁이 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정위에 보고하며, 분쟁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사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입법에고과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보완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비자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중요정보고시」 확대 적용키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위원회는 2002. 2. 27. 소비자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 유전자변형, 상품권 분야 및 결혼정보업 등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에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운영하는 「중요표시·광고고시」 적용대상은 종래 부동산중개업 등 21개 업종에서 22개 업종 및 3개 분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번에 있었던 중요정보고시제도는 ① '업종별 중요정보항목만을 규정하던 종전과는 달리 여러 업종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분야별'(소비자 안전 등 3개 분야) 중요정보항목을 새

로이 규정, ② 소비자피해 빈발 우려가 있는 2개 서비스 업종(결혼정보업, 영화업)을 고시 적용대상에 새로이 추가, ③ 표시와 광고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중요정보 항목을 '표시행위시 포함하여야 할 항목'과 '광고행위시 포함하여야 할 항목'으로 구분, ④ 표시·광고의 매체별 특성과 사업자 부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분 미만의 TV광고에는 고시 적용을 제외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의 전문은 본지의 '부록(62면 이하)'에 게재하였다.

2001년도 기업결합동향 분석

90년대 들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던 기업결합이 2001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그 건수가 2000년(703건) 대비 8.4% 감소(△59건)한 644건으로 나타났다.

결합형태로는 임원겸임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회사설립, 영업양수는 대폭 감소하였고, 제조업의 경우 기계·조립금속의 기업결합건수가 57.7%나 는 데 힘입어 전체적인 감소폭은 미미하나, 서비스업의 경우 건설, 유통, 금융부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문의 기업결합 위축으로 11.1% 감소하였다.

또한,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기업결합이 237건에서 168건으로, 전체 기업결합에서의 점유비중도 33.7%에서 26.1%로 감소하였다.

한편, 외국인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 전체 감소 건(△12건)에서 금융부실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일본이 주 요인으로 작용(△11건)한 것으로 나타

났다.

2001년 기업결합의 감소는 대내·외 경기불확실성이 증대되고 IT산업의 공급과잉·수익모델 불확실 등에 따른 투자위축을 반영한 것으로 기업결합 건수의 감소 등 양적 변화 외에 내용면에서도 질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

첫째,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보다 전후방산업 간의 수직결합을 통하여 경기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다수 활용되었고, 둘째, 전년에 30대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던 IT분야의 기업결합이 급감(△36.7%)하였고, 전통산업인 금융·건설·유통부문 등에서 비 30대 기업집단 중심으로 기업결합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편으로 LG, 한화, 코오롱, 고합, 동국제강 등의 기업집단에서 사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분할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기업분할이 사업구조조정 주요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월드컵관련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 2. 25(월), 『월드컵관련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월드컵조직위 정몽준 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기관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일부 사업자들이 가격담합,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월드컵대회와 관련하여 월드컵조직위가 대회 준비·운영과정에서 인지도 음식, 숙박,

여행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우선적으로 조사·시정하며, 내·외국인이 신고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시정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 4개 지방사무소(부산, 광주, 대구, 대전), 공정거래협회에 설치되어 있으며, 2002. 2. 25부터 10. 31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부터 월드컵대회 관련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본부와 4개 지방사무소에 『월드컵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월드컵대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시정 및 업계의 자율적인 경쟁문화 확산을 지원하게 된다.

2002. 2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용

공정위는 2002년 2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을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2월 1일자로 변동 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으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신규채무보증금지와 상호출자금지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2년 2월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2개사가 신규편입 되고, 7개사가 계열제외되어 2002년 3월 2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수는 2002년 2월 1일 605개사에서 600개사로 5개사 감소하였다.

2002. 2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개요

	2002. 2. 1.	편 입				제 외						증감	2002. 3. 2.
		회사 설립	주식 취득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친족 분리	기타	계		
전체	605	1	1	-	2	1	1	-	5	-	7	△5	600
1~4대	192	-	-	-	-	-	-	-	5	-	5	△5	187
5~30대	413	1	1	-	2	1	1	-	-	-	2	0	413

2002. 2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내용

- 편입 : 2개사(회사설립:1, 주식취득:1)
- 제외 : 7개사(친족분리:5, 합병:1, 지분매각:1)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업종명	사 유	회사명	업종명	사 유
두 산	(주)엔세이퍼	벤처투자 및 컨설팅	주식취득	-	-	-
신세계	(주)그린시티	민자역사, 부동산개발	회사설립	-	-	-
현 대	-	-	-	현대중공업(주)	선박건조업	친족분리
				(주)현대미포조선	선박건조업	"
				현대기업금융	여신금융업	"
				현대기술투자(주)	기타금융업	"
				현대선물(주)	금융서비스업	"
하나로통신	-	-	-	(주)하나로 인터데스크	그외 기타 서비스업	합병
현 대 백화점	-	-	-	(주)넥스에어	부가통신업	지분매각